

키움초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펀드코드: EA003]

투자위험등급 : 5등급[낮은 위험]						키움투자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을 감안하여 5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채권 및 어음, 단기사채등에 투자하여 금리 및 시장 상황의 변동성에 따른 이자를 변동 위험, 신용등급 하락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키움초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키움초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단위: %)	신규 투자신탁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u>고병모</u>	생년 <u>1992</u>	직위 <u>선임</u>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연평균수익률 (국내채권형, 단위:%)			운용경력 연수 <u>0개월</u>												
집합 투자 기구수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				━	━	━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u>7.13</u>	<u>5.64</u>													
<p>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1팀에서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며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팀 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p> <p>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p> <p>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p>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d3d3d3;">구 분</th><th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d3d3d3;">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td></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이자율 변동위험</td><td>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등도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권등의 금리변동에 따라 채권등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등의 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등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td><td>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및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한 경우, 신탁계약 및 신고서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및 어음등을 지체 없이 처분하는 등 이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td></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유동성 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주로 유동성이 풍부한 우량 등급의 채권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사모채 등 간혹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신용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채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에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td></tr> </tbody> </tabl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등도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권등의 금리변동에 따라 채권등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등의 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등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및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한 경우, 신탁계약 및 신고서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및 어음등을 지체 없이 처분하는 등 이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유동성이 풍부한 우량 등급의 채권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사모채 등 간혹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등도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권등의 금리변동에 따라 채권등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등의 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등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및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한 경우, 신탁계약 및 신고서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및 어음등을 지체 없이 처분하는 등 이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유동성이 풍부한 우량 등급의 채권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사모채 등 간혹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에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키움초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증권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또는 이자율 변동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경제성장률,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증권 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 투자자산들의 등락을 초래하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입 자산의 가격 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장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되거나 또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수익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되거나, 당사 운용중인 다른 펀드로 전환, 합병 또는 모펀드 이전 등의 방법으로 소규모 투자신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매입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2영업일(D+1)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3영업일(D+2)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기준가	<table border="1"> <tr> <td>산정방법</td><td>-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d></tr> <tr> <td>공시장소</td><td>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td></tr> </table>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 </thead> <tbody> <tr> <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 <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 </tbody> </table>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키움투자자산운용(주) 대표번호 : 02-789-03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kiwoomam.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4년 11월 28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head> <tbody> <tr> <td>판매 수수료선취 (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td></tr> </tbody> </table>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선취 (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선취 (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								

키움초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수수료미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11개월
	수수료후취	일정 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미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11개월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 (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말합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특정금전신탁계약,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등을 통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 나.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iwoomam.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iwoomam.com)